

공 고 문

보령시 남포면 죽도방파제 및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앞 방파제 주변에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.

1. 대 상

가.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

나.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앞 방파제

※ 상세 장소 :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

2. 출입통제 지정일 : 2015. 10. 12

3. 출입통제 기 간 : 연 중

4. 참고사항 :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2015. 9. 21.

보령해양경찰서



출입통제장소 구역도

가. 충남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- 기 간 : 연 중



나.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동백정 앞 방파제

- 범 위 : ————— 선 이내 지역
- 기 간 : 연 중

